

리>  
포>  
트>

## ▷간호지도자를 위한 행정강좌◁

# 예산편성

박 남 영

<국립보건연구원훈련부교수>

## 財務行政의 主된 研究對象

Dimock 교수 (4분야) :

- ① 예산
- ② 회계
- ③ 감사
- ④ 구매

White 교수 (4분야) :

- |          |          |
|----------|----------|
| ① 예산의 편성 | ② 예산의 집행 |
| ③ 회계의 기록 | ④ 회계의 감사 |

재무행정조직

## 財務行政組織

### 1. 經濟企劃院 豫算局

부총리인 경제기획원장관 밑에 2명의 차관보가 있다

기획차관보 : {경제기획국, 예산국  
[예산관리관]

운영차관보 : {경제협력국, 투자진흥관  
[외자관리관]

그외에 기획관리관과 총무과를 둔다.

예산국에는 다음의 5과가 있다.

- ① 예산총괄과
- ② 재정정책의 기획입안과 조정
- ③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총괄적 계획 및 자료 작성
- ④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조정
- ⑤ 예산비의 관리
- ⑥ 경제기획, 재무부, 원자력청 및 부정축재처리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집행
- ⑦ 기타 局內他課의 主算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② 總成基準課

① 예산편성에 필요한 기준과 업무단위의 책정

② 단위, 단가의 조사결정

③ 물가조사

④ 공무원의 보수에 따르는 재원조사

⑤ 예산과목에 관한 사항

⑥ 예산회계제도와 재정에 관련되는 법규에 관한 사항

⑦ 행정예산과 : 대통령실, 국회, 증양정보부, 청진국민운동본부, 간사원, 대법원, 국무총리실, 의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문공부총무처, 법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청, 공무원연금특별회계, 국영 TV방송사업특별회계 및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⑧ 투자예산과

⑨ 재정投融사업계획의 조정

⑩ 외국원조에 관계되는 예산의 조정

⑪ 농림부, 상공부, 전설부, 對充資金特別會計, 재정자금운영특별회계 및 농촌진흥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⑫ 企業예산과

⑬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⑭ 교통부, 체신부, 정부기업특별회계, 국민생명보험특별회계, 우편연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사업특별회계, 전매사업특별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2. 財務部 國庫局

재무부에는 長, 次官 밑에 2명의 차관보가 있으며 각

회 관리실과 총무과는 각부 공동된 조직이다.

재정차관보 : 국고국, 이재국, 외환국  
세정차관보 : 稅制局, 세관국

국고국 : 국고과, 主計課, 회계제도과, 출자관리과(4과)  
이재국 : 이재제1과, 이재제2과, 증권과, 보험과(4과)  
외환국 : 국제금융과, 외화자금과, 외환관리과(3과)  
세재국 : 세제제1~3과(3과)  
세관국 : 지도과, 기획조사과, 관세과, 관세조정과,  
국제과(5과)  
국고국 : 4개과의 일무는 다음과 같다.

- ① 主計課
- ② 국가의 세입세출의 총결산과 主計簿의 등기
- ③ 세입세출증빙서의 신사와 회계검사
- ④ 국고회계의 총괄
- ⑤ 국고보조금운영의 관리
- ⑥ 회계판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협의 승인 및 등의  
에 관한 사항(단, 회계제도과의 소관사항은 제외)
- ⑦ 회계공부원의 설치협의 지도와 研修
- ⑧ 전국국채의 발행 상환 및 滅債基金의 운영
- ⑨ 물품관리의 총괄과 조정
- ⑩ 회계제도과
- ⑪ 재정 및 회계판계법령의 立案과 협의
- ⑫ 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협의
- ⑬ 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련된 先金  
概算과 및 기타의 협의
- ⑭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
- ⑮ 회계제도에 관하여 설치된 자문기관의 운영
- ⑯ 회계판계법령에 관한 질의에 관한 해석, 회계제  
도과와 출자관리과의 관장업무는 생략한다.

## 豫算의 種類

### 1. 一般會計와 特別會計

특별회계는 예산통일의 원칙(국가의 세입세출은 일  
체로써 통일져오로 경리되어야 한다는 원칙)내지 예산  
단일주의의 예외로서 「국가의 회계중 특정한 세입으로  
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며,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별  
하여 경리되는 부분」을 말한다.

특별회계는 정부기업의 수지를 명백하게 하여 능을  
을 刺然하게 하며 어느정도 행정관청에 자유재량의 여  
지를 크게하여 능울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예산회계법상 특별회계설치의 요건은

- ①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 ②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 ③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  
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本豫算修正豫算 및 追加更正豫算

수정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또는 아  
직 예산이 의결되지 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다  
음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제도이다.

### 3. 暫定豫算, 假豫算 및 準豫算

(예산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예산집행)

임정예산이란 회계년도개시기까지 예산이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금액(최초의 4·5개월분)의 예  
산에 대하여 국고지출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다)

가예산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  
지 못하였을 경우에 국회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  
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구체적  
법 제94조2항에 규정한바 있다(현행 예산회계법에는  
없다)

준예산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회계년  
도개시전에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 ① 공무원의 복급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 ② 현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  
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 ③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등의 경비를 세입의 범  
위내에서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현  
행 제도)

### 4. 信任豫算과豫算超過支出의 追認

신임예산(Votes of credit) : 戰時 등에 지출을 요하는  
금액이나 그 지출속도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또 국가안전 보장상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신규사업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한 지출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신임  
예산이다. (영국에서 적용, 한국에서는 비적용)

예산초과지출의 추인(Excess Votes) : 의회가 의결  
한 예산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을 하고, 다음 국회

에서 사후추인하는 제도이다(영국에서 적용,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 豫算會計關係法令

### 1. 豫算會計法(1961. 12. 19 법률 제849호)

현법 제50~55조 및 제94조를 보통하는 재정총칙적인 법률로써 재정법(1951. 9. 2. 법률 제37호) 대신으로 제정되었다. 재정법은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모방한 것으로 모순이 많아서 개정하였다.

예산회계법 :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이 기본에 관한 법률로써 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와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법 제1조)

### 2. 憲法中豫算會計關係條項

#### 현법 제50조

- ① 국회는 국가예산안을 실의 확정한다.
- ②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기간내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안에서 전년도예산에 충하여 지출할 수 있다.

- ①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 ② 현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 ④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 현법 제51조

- ①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현법 제52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개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현법 제53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있다.

#### 현법 제54조

국체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현법 제5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현법 제94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5~11인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 3. 企業豫算會計法(1961. 12. 13 법률 제28호)

예산회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 예산 회계법의 적용범위는

- ① 자본금의 5할이상을 정부가 투자한 투자기관
- ②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귀속재산증에서 그 예산의 5할 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기업체
- ③ 한국은행(시행령에서 20개의 기업체 즉 산업은행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 公企業(Public Enterprise)의 形態

① 部省형태 : 교통부, 철도부, 전래청 등과 같이 국가공무원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기업예산 회계법이 적용된다.

② 주식회사형태 : 대한증서 등과 같이 정부주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절하고 있는 공기업

③ 公社형태 : 산업은행, 조폐공사, 석탄공사 등과 같이 정부가 주식 전부를 절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회사 형태 및 공사형태의 공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이 적용된다.

## 豫算의 編成執行 및 決算

### 1. 豫算編成

경제기획원장판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경제기획원장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제기획원은 이를 종합정리해서 8월 15일까지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의결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정기국회초인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는 정부시정연설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여 국회본회의에 제출한다.

국회본회의에서는 회계년도개시 30일전인 12월 1일까지 통과시키도록 한다.

우리나라 회계년도는

1945~1953 : 4월 1일~익년 3월 31일

1954년 : 4월 1일~익년 6월 31일 (15개월)

1955년 : 7월 1일~익년 12월 31일 (18개월)

1957년~현재 : 1월 1일~12월 31일

## 各國의 會計年度 例

1월 1일~12월 31일 : 한, 불, 和, 白 서서등

4월 1일~익 3월 31일 : 영, 丁, 希, 土, 加, 일, 서  
특 등

7월 1일~익 6월 30일 : 미, 이, 비, 호, 서천, 낙위  
등

## 國家豫算의 構造

① 일반재정부문 : 일반회계와 4종의 특별회계 즉 대중자금 특별회계, 경제개발 특별회계, 재정자금 운영 특별회계 및 부정축재 관리특별회계를 합한 것이었으나 최근에 부정축재 특별회계는 없어졌다.

② 특별재정부문 : 17개 특별회계 중에서 일반행정의 기능수행과 관련이 있는 일반재정부문의 4개 특별회계를 제한 것으로 철도, 통신, 전력, 양곡조달 국립의료원 등의 특별회계가 여기에 속하며 특립체신체를 채택할 수 있다.

③ 경부투자기관부문 : 주식회사형태와 공사형태의 공기업 관계의 회계부문이다.

예산업의 내용은 ①예산총칙 ②세입세출예산 ③계속  
비 ④국고채무부담행위

## 豫算案에添附하여야 하는書類

- ① 예산안 편성지침
- ②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 ③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④ 전전년도세입세출예산의 통계표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액의 통계표 및 순계표
- ⑤ 국채와 차입금의 상황에 관한 전전년도 실적, 전년도 말과 舊該年度末의 현재고주정 등
- ⑥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 현재고와 전년도말 및 당해년도말의 현재고 추정에 관한 조사
- ⑦ 국고채무부 담행위 관계서류
- ⑧ 계속비에 관한 관계서류
- ⑨ 예산경원표와 물가표등

예비비 : 각 중앙관서장이 익 3월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예비비 사용조서를 제출하면 재무부에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고 대통령의 승락을 받아서 감사원과 차기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집행이 완료된 예비비의 법률적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비비집행에 관하여 국회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치문제로 별 뿐이다.

예비비의 관리사용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에서 책임을 가진다.

## 2.豫算執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대정요구서와 재무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판은 분기별 예산대정계획서를 작성하여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락을 받도록 되어 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원칙으로는

① 통일성의 원칙 : 회계기관, 회계절차, 국고등 재무부장관의 재정총괄권과 감사원의 통일적 회계처리·감독

② 정확, 엄정성의 원칙

③ 공정성의 원칙 등이 있으며

예산집행상의 제준칙으로는

①년도소속문란의 금지

②세입세출 혼동의 금지

③예산목적의 사용의 금지

④예산의 移用, 流用, 移替의 금지

⑤예산의 경제적 사용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流用 : 행정과목인 細項과 目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으로써 봉급과 공공요금은 제외된다. 流用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락을 받아서 가능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은 승락할 경우에 그 내용내용을 당해중앙관서장, 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移用 : 입법과목인 章·금·항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제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승락을 받아야 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은 그 내용을 당해중앙관서장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移替 : 정부조직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의 원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경제기획원장관은 당해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 예산을 상호이체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유용, 이용과 마찬가지로 당해중앙관서장, 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出納整理期限

1회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는 익년 3월 31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다르다. 즉 익년 1월 20일까지 기한인 사항

- ① 세입금의 수납기한
- ② 세출금의 지급기한 및 지출기한
- ③ 반납금의 戻入기한
- ④ 한국은행의 세입금 수납기한

### 翌年 1月 31까지가 期限인 事項

① 세출금 지출에 있어서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한 지출(대체수표)

② 前渡資金 출납공무원에게 지출된 지출의 반납금 戻入

③ 한국은행의 세출금 지급과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의한 세입금의 수납 장부의 정리기한은 전국의 세입징수관 및 지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접계 정리하여 主計簿를 마감하는데 필요한 기한으로 한다.

회계년도의 소속년도를 결정하는 기준

① 발생주의—실질주의—체권채무주의

② 현금주의—형식주의—현실적으로 수입지출하는 날

①은 대륙법계로서 우리나라의 원칙이며 ②는 영, 미국계로서 우리나라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동일회계시에 재무관, 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은 상호겸임될 수 없다.

재무관(지출원인행위를 위임 받은자) : 대리재무관, 分任재무관, 대리分任재무관을 임명하면 지출관 재무부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출관(수표발행으로 지출하는 자) : 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대리분임지출관을 임명하면 재무부, 재무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現金出納公務員

### 3. 예산결산

예산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 세출 및 계획비의 결산보고서를 익 3월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익 3월 31일까지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완결하여야 한다.

각 부처의 세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한 세입징수보고서,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를 장수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에 의하여 작성해서 익월 15일(세입징수보고서는 익월 20일), 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장의 장은 결산자료를 익 3월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재무부장관은 충결산서를 6월 30일까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승락을 받은 후에 경제기획원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은 8월 30일까지 그 결산검사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9월 초의 정기국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경제장관 : E P B, 외무, 재무, 농림, 상공, 건설, 보사, 교통, 체신 및 과학기술처의 장관(10인)

### 豫算分類

1.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집의 : 기능별 분류와 조직별 분류
2. 예산집행 : 품목별 분류
3. 경제분석 : 경제성질별 분류, 성적(실적) 주의예산제도와 資本算制度

### UN便覽에 依한 機能別分類(1963)

- ① 일반경비 : 일반행정, 국방, 사법, 경찰
- ② 공업사업비 : 도로, 수로, 수도, 소방, 위생 등
- ③ 사회복지비 : 교육, 보건, 사회보장 등

- ④ 경제적경비 : 농수산, 광업, 동력, 제조업, 전설  
·업, 운송, 통신, 보관등
- ⑤ 기타경비 : 債分,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기타  
·해외이전등

### FY 71 一般會計 歲出豫算의 科目表

100(인건비) 101급여, 102연금, 103상용잡금 104수  
·달, 105정액수당, 106상용피복비, 107급糧費, 108日用  
·雜給(72), 200(물건비), 210(여비), 211여비, 212월액  
·여비, 213국외여비, 220(일반수용비) 221일반사무용품  
·비 222인쇄비, 223접기구입비, 224도서구입비, 225포  
·장운송비, 226수수료, 227수선비, 228전률유지비, 229  
·재료비등, 230(환경비) 231정액판공비, 233정보비, 234  
·보상비, 240(공공요금 및 세세), 241통신요금, 242철  
·도요금, 243전기수도료, 244면료비, 245통신가설료,  
·246제세, 250(용역비), 251보험료, 252임차료, 253의  
·료비, 254국내부담금, 255 용여비, 260보관료, 260(차  
·량 및 선박비), 261차량비, 262선박비, 263선박유류비,  
·264기타장비유지비, 270(기타물건비), 271수용자급량  
·비, 272피복비, 273동식물구입비, 274사료구입비, 300  
(경상이전), 301민간에 대한 경상수수료, 311구로회복  
·비, 313매상금, 314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15보상금  
·316사회보장적수혜금, 317출손금, 320(자치단체에 대  
·한 경상이전), 321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322교부  
·금, 323국제부담금, 330(해외이전), 331해외경상및자  
·본이전, 332국제부담금, 340이자, 350가격보조, 400(자  
·본거래), 410(자본형성비), 411토지매입비, 412시설비,  
·413제산취득비, 415시설부채비, 416비품비, 420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30(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431자  
·치단체의 보조시설, 432자치단체를 통한 민간보조, 440  
·출자금, 450융자금, 460상환금, 500(기타거래) 501전  
·출금, 520적립금, 530회전기금

### FY71의 章, 款, 項番號表(保社部)

#### 40장

##### 보건 및 사회보장

##### 41판 보건위생

1100항 보건행정 : 1101기획운영, 1111보건통계

1200항 보건사업 : 1211보건계동, 1212기생충관리

1213성병관리, 1214보자보건, 1215의료보험

1300항 방역사업 : 1311예방 및 겸역사업, 1312치료  
·사업,

1400항 위생사업 : 1411환경위생사업, 1412식품위생,

1413공해방지

1500항 의료행정 : 1511의사관리, 1512의료기판관리,

1513치무관리, 1514보건요원양성, 1515보건장비및  
·시설관리

1600항 약무행정 : 1611약무관리, 1612의약품수급관  
·리, 1613마약관리, 1614약사지도사업

1700항 결핵퇴치 : 1711결핵관리, 1712공주병원

1713마산병원

1800항 나병퇴치 : 1811나병관리, 1812나정착사업,

1813소록도병원, 1814옹호병원

1900항 정신병관리 : 1911정신병원

2100항 보건연구원 : 2109기획운영, 2111시험 및 겸  
·정사업 2112약품생산, 2113훈련 및 연구사업 2114  
의약사시험관리

2200항 겸역소운영 : 2211~20서울, 인천, 광주, 여  
·수, 마산, 釜山, 墨湖 및 濟州檢疾所

### 43款 社會問題對策

2400항 자활지도사업 : 2411자활지도사업

2500항 사회사업 : 2511~16사회보장행정, 아동사업  
·자립학원, 삼육학원, 재활원 및 사회사업, 지도자  
·훈련원

2600항 부녀사업 : 2611~13 부녀사업, 부녀보도소 및  
여성회관

2800항 구호사업 : 2811~15 시설구호, 주택구호, 영  
세민구호, 의원교호, 재해구호

45판 인구대책

2300항 인력진출 : 2312이민사업

2700항 가족계획사업 : 2711가족계획사업, 2712가족  
계획연구원

41판 보건행정

2000항 NMC : 2011의료비, 2012간호학교 9999비  
·비

### 租 稅

#### 1. 所得稅

① 不動產所得稅 : 土地와 定着物의 賃與로 因  
한所得에 1년 2回賦課한다.

② 配當利子所得稅 : 甲種은 國內의 內國人, 乙

種은 國內의 外國人과 國外의 國內人丙種은 非營業資金의 利子로써, 1년에 4回賦課한다.

③ 勤勞所得稅：甲種은 每月 1回, 乙種은 1年

4回賦課한다.

④ 事業所得稅：1年 2回 賦課

不動產所得稅와 事業所得稅의 稅率은

6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5만원 초과	60만원 초과	150만원 초과	250만원 초과
3%	15%	20%	30%	40%	50%	55%

세율	7%	9%	11%	14%	20%	27%	34%	41%	50%
감증근로	만원이하	만원	2만	3만	6만	8만	10만	15만	20만초과
2종근로	3만원이하	3만원	6만	9만	18만	24만	30만	45만	60만

## 2. 法人稅：內國法人稅와 外國法人稅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500만원 초과
공개	15%	20%	25%
비공개	25%	35%	45%

## 3. 營業稅

- 0.3% : 電氣外工業, 保險業, 製造業, 都賣業等
- 0.5% : 水產業, 鑛產業, 信託業等
- 0.7% : 金融業, 運送保管業, 不動產買賣業等
- 1% : 浴湯, 理, 美容業, 典當業, 建設業等
- 1.5% : 飲食店業, 其他, service業
- 2% : 料理店業, 娛樂, service業等

## 4. 相續稅와 贈與稅

상속세	20만~50만~200~500~1000~3000~1억~5억원
증여세	30만~100~300~1000~2000~5000~2억원
세율	5% 10% 15% 20% 30% 40% 50% 60% 70%

## 5. 通行稅

20% : 航空機, 택시, 窓台車等

10% : 汽車, 座席乗合車等

5% : 乗合車, 電車等

6. 酒稅：위스키150% 택주100% 合成택주와  
고향주90% 清酒80% 合成清酒60% 소주30% 果實酒20%

7. 物品稅：娛樂用器具70% 寶石과 人髮製品  
50% 真珠40% 等

8. 其他：石油類稅, 入場稅, 電氣, gas稅, 印紙稅, 登錄稅, 證券去來稅, 再評金稅, 特別行爲稅, 火藥稅, 交通稅等 但, 關稅와 順稅는 國稅徵收法上의 關稅가 아니다.

## 9. 地方稅：

① 獨立稅：土地稅 遊興 飲食稅 財產稅 自動車稅, 農地稅, 馬券稅, 層畜稅, 免許稅, 鑛稅等

② 附加稅：所得稅法人稅其他 目的稅에 附加하여 10% 程度로 賦課한다.

## 監查院機構

원장—감사와 원회의 (9인) —현 법제 93조 5~11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밑에 5국이 있다.

제1국	제1파 : 세무부, 세관, 한국은행
	제2파 : 사세청, 서울사세청
	제3파 : 부산사세청
	제4파 : 광주사세청
	제5파 : 제부부관재국, 지방관재국, 대전사세청
제2국	제1파 : E P B, 산공부 일자
	제2파 : 농림부
	제3파 : 건설부
	제4파 : 조달청
	제4파 : C I A, 감사원, 중앙선판위 등
제3국	제1파 : 내부부
	제2파 :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제3파 : 문교부
	제4파 : 보사부, 원희처
	제5파 : 법무부, 대법원, 문공부
제4국	제1파 : 외무부, 국방본부(영무청)
	제2파 : 육본, 군수기지사령부등
	제3파 : 제일군사령부
	제4파 : 제이군사령부
	제5파 : 해군, 공군, 해병대
제5국	제1파 : 교통부
	제2파 : 체신부
	제3파 : 전대청
	제4파 : 상공부산하 기업체
	제5파 : 상공부이의회 국가기관이 관할하는 기업 체. 5국이외에 기술실, 심의실, 기획실 및 총무 과로 조직되어 있다.